

잊혀질 권리의 논의 동향과 우리나라 인터넷 법제의 수용과제*

정상기** · 김정열***

Trend of Dispute on the Right to Be Forgotten and Acceptance Task of Internet Laws in Korea*

Sang-Ki Chung** · Kyung-Yeol Kim***

■ Abstract ■

Matters related to the right to be forgotten started the dispute Europe to introduce it first when Data Protection Directive established in 1995 proceeded revision. Relating to this, diverse disputes proceed on responding to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nd internet laws in our nation. Especially as our National Assembly submitted the law regarding the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network use and protection of information and amendment of copyright, it is necessary to look into the movement on introduction of law of right to be forgotten closely in detail. EU which attempted the institutionalization for the first time, relating to review of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proposed opinions such as the necessity to define subjects of personal information concretely and specifically and or protection target and balanced consideration on freedom of expression which is constitutional value. In the case of our nation, there was legislation attempt to introduce the regulation but it was limited in the form of fallen effectiveness without concrete and detailed review on internet law. To solve such problems, it is necessary to look into issues and matters to be considered required to accept right to be forgotten closely and discuss possibility of introducing right to be forgotten, conflicts between fundamental rights becoming issue, effect of goal achievement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through the system introduction, and other rational acceptance method.

Keyword : The Right to be Forgotten, Internet Laws, Personal Information, Freedom of Expression, Legislations Acceptance

논문투고일 : 2013년 01월 27일 논문수정완료일 : 2013년 02월 27일 논문게재확정일 : 2013년 03월 05일

* 이 논문은 2012년 한남대학교 연구년 지원에 의한 결과임.

** 한남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교신저자

*** 광운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1. 서 론

잊혀질 권리에 관한 사항은 1995년 제정된 데이터 보호지침(Data Protection Directive)의 개정 작업이 진행되면서, 유럽에서 가장 먼저 도입하고자 하는 논의가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9, 12]. 잊혀질 권리에 관한 도입 논의는 표현의 자유 혹은 알 권리와는 갈등, 인터넷 산업과 관련한 미국과 유럽 대륙의 신경전 등 다양한 쟁점들이 존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 및 인터넷 관련 법제의 대응에 관하여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더군다나 기존의 우리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에서 EU의 잊혀질 권리의 내용과 유사하게 개인정보 주체를 보호하고 있으나 입법과정을 살펴보았을 때 잊혀질 권리를 감안하고 마련한 것이 아닌점에 비하여, 최근 우리 국회에서 정보통신망법과 저작권법의 개정안이 제출되면서 구체적으로 잊혀질 권리의 법제 도입에 관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점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4]. 잊혀질 권리의 도입 여부, 잊혀질 권리와 관련된 법적 쟁점들과 더불어 우리 개인정보보호법의 수준, 인터넷 법제의 현실을 세밀하게 조망하고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실효성 있는 제도가 도입 될 수 있는 개정 내용이 마련되는 것이 필요하다.

본문에서는 잊혀질 권리와 관련한 동향을 살펴보고,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의 인터넷 법제 환경하에 해당 제도 도입과 관련한 필요성이나 구체적 방법 등에 관하여 논의하고 효과적인 수용 방안이 무엇인지 도출해 보고자 한다.

2. 잊혀질 권리의 논의동향

2.1 잊혀질 권리의 도입배경

현대사회는 인터넷과 디지털 중심의 사회로서 핵심 기반인 ICT의 기술적 발전 속도가 매우 빨라지

면서, 이전에는 접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위험들이 부각되기 시작했다. 기술의 성장과 신속한 변화에 따라, 이를 활용하는 이용자들의 성향과 수준도 신속하게 적응해 가는 반면에 규범 및 제도는 그 내재적 특성뿐만 아니라, 예상하지 못한 이용패턴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발생하는 위험들로 인하여 안정적인 규율 체계를 벗어나는 사례에 직면하는 사례가 늘어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유럽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온라인 생활이 빈번하고, 인터넷이 인간의 삶에 매우 깊숙하게 자리잡고 있는 우리 사회 또한 예외는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인터넷을 통한 의사소통이 빈번해지고, 정보의 유통 속도가 견잡을 수 없이 빨라진 시대에서 유명인들에 대한 유언비어나 루머의 확산은 당사자를 죽음으로 몰아붙이는 위험으로 작용하기도 하였다[6]. PC와 웹 중심의 온라인 패턴이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 등 모바일 기기를 이용한 SNS의 사용 확대로 이어지면서 더욱더 정보의 확산 효과가 증대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효과는 보다 신속한 루머의 확산을 조장할 수 있게 되었으며, 새로운 위험을 내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문제는 EU의 데이터보호 지침 개정의 중요한 이유로 작용하였다[9]. 단순히 모욕적 언사를 온라인을 통해 전달하는 폭력의 양태가 아니라, 개인의 신상(학력 등)과 관련하여 의혹을 제기함으로써 괴롭힘을 가하는 경우도 있다. 연예인과 같이 공적영역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도 일반인들에 대한 신상털기와 마녀사냥이 이루어지는 일도 있다. 이러한 온라인 공간에서의 폭력으로 인한 위험상황은 비단 우리사회에 국한되는 현상이 아니다. SNS 서비스가 다양하게 확산되고 있는 미국사회 특히, 청소년 사회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따돌림이 심각한 수준으로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3]. Cyberbullying 연구센터에 따르면 11~18세 청소년의 20%가 사이버불링 피해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13]. 온라인에서의 의사표현과 소통이 활성화되고 소통의 수단이나 창구가 다양화되고 기능이 확대되면서

위험의 정도 또한 심화되고 예상치 못한 위험이 발생하기도 한다. 정보가 유통·확장되면서 발생하는 폭력적 상황과 더불어, 온라인에서의 물품구매와 같은 기본적 경제활동이나 금융거래에 이르기까지 매우 손쉽게 가능해지고 개인정보의 활용이 빈번이 이루어지면서 개인정보의 유출이나 침해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재산적 손실에 관한 위험도 증대하고 있다. 단순 유출, 해킹뿐만 아니라, 해당 피해가 피싱 등으로 이어져 온라인 사이트에서 사용하는 계정의 비밀번호, 금융계좌의 비밀번호 등까지 노출되어 범죄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사례가 증가하는 점과 이러한 사건으로 발생하는 피해가 대규모로 진행되는 것은 온라인 거래의 확산에 기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표 1〉 주요 개인정보 대형 유출 사건

시기	업체	피해규모
2006~2008년	하나로텔레콤	650만 명
2008년 2월	옥션	1863만 명
2008년 9월	GS칼텍스	1119만 명
2010년 3월	신세계몰	330만 명
2011년 4월	현대캐피탈	175만 명
2011년 7월	SK커뮤니케이션즈	3500만 명
2011년 11월	넥슨	1320만 명
2012년 4월	EBS	400만 명
2012년 7월	KT	870만 명

이렇듯 기록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오랜기간 남겨질 뿐만 아니라, 그 전파와 유통 또한 신속하게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면서 디지털과 온라인(인터넷) 중심의 사회에서 기존의 삶의 방식과 다른 형태의 위험과 불안요소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정보의 보존과 보급의 용이성은 우리의 삶을 편리하게 개선하기도 하였지만, 반면에 정확하지 않은 정보나 밝혀지지 않았으면 하는 개인의 정보까지 영속하고 제한 없이 전파되도록 하는 불안함을 조성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불안과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로서 프라이

버시 혹은 개인정보보호 및 자기결정권과 관련하여 ‘잊혀질 권리’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움직임이 유럽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2.2 잊혀질 권리의 내용

2.2.1 EU의 데이터보호 규정(안)에 따른 잊혀질 권리의 내용

2.2.1.1 EU 데이터보호 규정(안)[16]

1995년 제정된 데이터 보호지침(Data Protection Directive)은 EU에서의 개인정보 보호의 역사에 의미 있는 이정표를 설정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 데이터 보호지침은 데이터의 보호와 관련하여 자기결정권이라는 근본적인 권리의 보호와 내부시장(회원국 간의)에서의 성과창출을 위한 개인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이라는 오래된 두 가지 중요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절차와 규정을 담고 있었다. 그러나 16년이 흐른 시점에서 유럽(EU)에서의 데이터보호를 위한 포괄적 접근이라는 보고서에서는 애초의 위 데이터 보호지침이 추구하고 있던 두 가지 원칙의 달성이라는 목적은 유효하나, 급속한 기술개발과 세계화로 인하여 개인정보보호에 관점이 있어 새로운 도전이 발생하였고 그 개정(보완)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9, 16]. 지침(Directive)의 경우 회원국의 국내법을 제·개정하는 과정에서 지침에 대한 해석과 적용이 상이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일률적인 규범 적용 및 의무이행을 위해 개정 데이터 보호 규정은 EU 회원국의 국내에 직접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규정(Regulation)으로 입법화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8]. EU의 법체계하에서 일반규정은 EU 전체에 직접 적용되는 강력한 규범이고, 규정이 발효되게 되면 회원국의 국내법에 우선하여 적용하게 된다. 따라서 회원국은 국내법을 EU 규정에 일치시키는 입법을 하거나 기존 법을 개정하여야 한다. 다만, 개정안이 발효되려면 27개 회원국 정부 대표로 구성된 이사회와 유럽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2.1.2 잊혀질 권리의 내용

잊혀질 권리는 다음 3가지 사항을 요소로 한다. 첫째, 개인정보의 삭제 및 유통제한에 관한 권리를 핵심으로 하며, 그 상대방(개인정보 처리자 등)에게는 삭제 등의 의무, 제 3자에 대한 통지의무가 발생한다. 둘째, 잊혀질 권리의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수집목적의 달성, 수집에 대한 동의를 철회, 보존기간의 도과 등의 사유가 있는 개인정보로 한정된다. 셋째, 잊혀질 권리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거나, 공중보건이나 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주장할 수 없다.

2.2.1.2.1 개인정보의 삭제 및 유통제한

정보주체는 처리자(The controller)에 대하여 정보가 ① 수집·처리 목적을 달성하여 더 이상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정보주체가 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거나, 동의했던 저장기간이 만료된 때, 그리고 정보의 처리를 위한 다른 법적 근거가 없는 경우, ③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처리에 반대하는 경우, ④ 정보의 처리가 그 밖의 다른 이유로 동 규칙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personal data)의 삭제 및 유통을 제한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다만, ①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거나, ② 공중보건의 영역에서의 공익을 위하여, ③ 역사적·통계적·과학적 연구목적을 위하여, ④ (회원국의)자국법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존에 관한 법적 의무의 충족을 위하여 개인정보의 보유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도록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삭제요청 등의 권한을 제한하고 있다.

2.2.1.2.2 개인정보의 처리제한과 예외적 처리

처리자는 ① 개인정보의 정확성에 대하여 다름이 있고 그 검증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 동안, ② 수집목적의 달성으로 더 이상 개인정보가 필요로 하지 아니하지만, 입증을 위하여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 ③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법이나, 정보주체가 삭제를 반대하고 대신 그 이용의 제한을 요구하는 경우, ④ 정보주체가 다른 자동처리시스템으로 개

인정보의 이전을 요구한 경우에는 삭제 대신 개인정보의 처리를 제한하여야 한다.

처리가 제한된 개인정보라 하더라도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입증의 목적, 다른 사람(자연인/법인)의 권리보호, 공익 목적을 위해서는 저장하는 것이 아닌 한(with the exception of storage) 그 처리가 가능하며, 다만 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을 제거하는 때에는 미리 그 사실을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2.2 우리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

2.2.2.1 개인정보보호법상의 내용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고, 열람 후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다(제4조의 제4호 및 제36조 제1항).

또한,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자신의 개인정보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처리자가 이러한 요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의 전부를 정지하거나 일부를 정지하여야 하며, 처리가 정지된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의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처리자가 개인정보 주체의 처리제한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제37조 제1항부터 제4항).

개인 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된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한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하며, 파기할 때에는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제21조).

2.2.2.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의 내용

우리 정통방법은 제44조에서 포괄적으로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유통시키면 안된다고 규정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해당 정보의 유통 금지를 위한 노력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또한 제44조의 2에서는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침해를 받은 사람은 침해 사실을 소명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해당 정보를 삭제하도록 하거나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제30조에서는 이용자의 권리라고 하여, 개인정보 열람 및 오류 사항에 대한 정정 청구권을 규정하고 있다. 제29조는 이용목적을 달성하였거나 보유 및 이용기간이 만료 하는 등 개인정보 파기 사유가 발생하면 처리자로 하여금 지체 없이 파기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2.3 비교 검토

2.3.1 보호대상

우리 개인정보보호법과 정통방법은 그 보호대상을 개인정보라고 적시하고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

인정보에 대하여 “개인의 신체, 신념, 사회적 지위, 신분 등과 같이 개인의 인격주체성을 특징짓는 사항으로서 그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정보라고 할 수 있고, 반드시 개인의 내밀한 영역이나 사사(私事)의 영역에 속하는 정보에 국한되지 않고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까지 포함한다. 또한 그러한 개인정보를 대상으로한 조사·수집·보관·처리·이용 등의 행위는 모두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여 법령에서 규정하는 개인정보의 범위와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7]. 이는 법령에서 정의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범위가 상대적으로 한정적인 것으로서, 잊혀질 권리의 보호범위에서 배제되는 개인정보가 있을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5]. 이는 EU의 데이터보호 규정(안)에서 정의하는 개인정보가 정보주체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우리 헌법재판소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으로서 개인정보의 범위와 유사한 점과 차이를 보인다[16].

2.3.2 실효성 확보 수단

정통방법의 경우 법령에서 정의하는 개인정보의 범위에 국한되는 내용보다 넓은 의미의 정보 삭제 요구권이 제공되고 있다. 위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사생활 침해 혹은 명예훼손과 관련된 정보의 경우 침해를 받은 사람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정보를 삭제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분쟁의 대상이 되는 해당 정보에 대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임시조치를 해야 하는 것과 별개로, 이용자의 해당정보의 삭제요청에 대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실질적으로 삭제 등을 행하지 않더라도 벌칙 등의 제재 규정이 없어 그 제도적 실효성 즉, 이용자 보호의 효과가 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 이는 EU 데이터보호 규정(안)의 경우 제79조 제5항에서 감독기관은 고의 또는 과실로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특히 제17조에 따른 ‘잊혀질 권리’의 혹은 삭제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

하지 않거나, 일정한 기간 안에 이를 보장하는 방법을 수행하는 것에 실패하거나,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대한 복사, 복제 또는 링크의 삭제 요청 시 해당 정보를 처리·취급하는 제 3자에게 알려야 함에도 필수적인 절차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 개인에게는 500,000유로, 기업에게는 연 매출액의 1%까지 과징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여 개인에게 보장하는 권리실현의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에 비하여 입법적 미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16].

2.3.3 기본권 갈등문제

EU의 잊혀질 권리의 경우 개인정보의 삭제 청구권의 실효성을 보장하면서도 표현의 자유 및 알권리와 관련하여 사회적으로 필요한 기록의 경우는 삭제범위에 제외시킴으로써 잊혀질 권리의 제한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만큼 중시되는 표현의 자유와 국민들의 알권리의 보장 필요성을 고려한 것이라고 할 수는 있으나, 그 구체적 대상이나 사례를 용이하게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에서는 제도 시행에 있어서 어려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이고 세밀한 기준을 마련한다고 하더라도 삭제를 요구하는 범위의 데이터와 기록으로 존치해야 할 정보의 범위가 명확하게 구분하기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인식과 분위기에 따라서 그 경계가 모호해져 매우 빈번하게 수정될 가능성이 다분하다고 할 수 있다[5].

3. 잊혀질 권리의 법제화

3.1 EU의 잊혀질 권리 도입추진 현황

3.1.1 제안

데이터보호 규정(안)의 경우 2012년 1월 25일 EU 집행위원회가 의회와 이사회에 공동결정 절차(co-decision procedure)에 따라 제안하였다. 해당 규정(안)에서는 위에서 간략하게 살펴본 것과 같이 잊혀질 권리와 관련하여 제17조에서 개인정보 삭제 및 유통제한에 대한 권리, 삭제 예외사유, 개

인정보처리 제한, 제 3자에 대한 링크·복사·복제에 대한 삭제 통지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3.1.2 1차 검토의견

EU의 개인정보보호 작업반은 2012년 1월 데이터보호 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출하였고, 해당 의견은 같은 해 3월 채택되었다. 검토의견에서는 데이터보호 규정(안)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강화하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하나, 잊혀질 권리의 실현가능성과 관련하여 문제점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개인정보처리자가 제 3자 통지의무를 이행하는데 한계가 발생할 수 있고(예, 제 3자를 모두 파악하지 못하거나 통지 후에 새로운 복제가 발생하는 경우 등), 더욱이 삭제요구를 이행하지 못한 제 3자에 대한 강제 이행 방안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개인정보처리자가 존재하지 않거나 통지 및 연락이 불가능한 경우 정보주체가 취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없고, 이러한 경우에 있어 정보주체의 제 3자에 대한 직접 삭제요청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잊혀질 권리와 표현의 자유간의 균형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은 잊혀질 권리의 도입과 관련하여 국내에서도 지속적으로 논의되는 헌법상 기본권 갈등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제기와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10].

3.1.3 2차 검토의견

2차 검토의견에서는 잊혀질 권리의 내용을 명확하기 위한 위임 입법 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해당 내용을 살펴보면, EU내의 정보주체와 개인정보처리자가 권리 및 의무의 내용을 명확히 인지하기 위해 정보 주체의 명확한 개념 정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개별 회원국의 위임 사항에 대한 EU차원의 구체적 가이드를 개발 등에 관하여 권고하고 있다[11].

3.1.4 관련 연구결과

ENISA(The European Network and Informa-

tion Security Agency)로부터 잊혀질 권리의 기술적 실현가능성에 관한 연구결과가 발표되었다. 잊혀질 권리는 기술적 수단만으로는 실현될 수 없으므로 실현가능한 권리로 작용하게 하기 위해서는 기술적 조치와 국제적으로 규율될 수 있는 수준의 규범이 필요하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 보고서에서는 현재까지 기술적 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못하므로, 잊혀질 권리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개인정보 범위 및 개인정보 삭제 요구권의 주체와 요건, 개인정보 삭제 방법 등에 관하여 상세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15].

3.1.5 수정안 제안

EU의회 시민 자유 위원회의 Jan Philipp Albrecht 조사위원은 데이터보호 규정(안)에 대한 수정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이 보고서를 통하여 데이터보호 규정(안)에 대한 포괄적인 수정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데, 주로 잊혀질 권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살펴보자면, 가장 주목할 점은 표현의 자유와의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는 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보고서는 데이터보호 규정(안)에서 제시한 잊혀질 권리의 제한 범위 가운데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사유에 관하여 유럽 기본권 헌장(Charter of Fundamental Rights of the European Union)에 조화되도록 해석되어야 하며, 유럽인권협약(ECHR, Th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를 통해 보장하는 내용으로 이해하여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14].

3.2 우리나라 인터넷 법제의 잊혀질 권리 입법논의

3.2.1 잊혀질 권리의 도입 가능성

현재 잊혀질 권리와 관련한 국내에서의 논의는 주로 잊혀질 권리를 인터넷 중심의 온라인 생활이 확대되고 이로 인한 위험 및 피해가 발생하고 확대됨에 따라 독자적 기본권의 하나로 인정하거나, 사생활 보호,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확대, 인격권

의 내용으로 포섭하는 등의 논의가 주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문제는 잊혀질 권리가 헌법적 권리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5]. 하물며, 잊혀질 권리가 입법창설적 권리에 해당하지는 여부에 관하여 아직 우리사회는 명확한 인식의 합의에 도달하고 있지 못하다고 판단된다[5].

허나, 유럽에서 본격적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잊혀질 권리에 관한 평가라는 측면에서 잊혀질 권리에 관한 연구 및 국내도입과 관하여 진행되고 헌법적 기본권 갈등을 어떻게 해결 하여야 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검토하는 것은 기존의 논의가 잊혀질 권리를 헌법적으로 수용한다는 전제하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3.2.2 개정안의 내용

2012년 2월 12일 19대 국회를 통하여 잊혀질 권리와 관련한 두 개 법령의 개정안이 발의 되었다.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통방법 및 저작권법의 개정안의 제안이유를 살펴보면, 정통방법 제44조의 2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를 유발하는 정보의 삭제 요구와 관련하여 개인이 자신과 관련된 내용 또는 과거 자신이 작성한 글 등에 대해서는 삭제요구가 어려울 수 있다는 이유로 자신의 저작물에 대한 권한을 명시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삭제요구와 같은 처분권을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강화하는 형태로 신설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개정안들을 살펴보면, 개인이 온라인 게시판 등 인터넷 상에 게시하는 게시물은 게시자의 저작물로서 삭제권한이 주어지므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여 달라고 요청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는 구조를 따르고 있다.

3.2.2.1 저작권법상 저작물의 한계

저작권법상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의미한다고 정의되어 있다. 저작

권법 개정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온라인상 게시된 본인 저작물의 삭제 요청의 경우 그 범위가 저작물의 제한될 것이다. 허나, 개인과 관련한 정보의 게시 및 유통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개인의 신상을 들추는 행위 등의 부작용은 오히려 저작물성을 갖는 저작물과는 관련이 없을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개인이 출신학교를 적시하거나, 특정 장소에 특정시간에 위치했었다는 등의 내용은 저작물성을 갖는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해당 정보들은 개인을 특정하여 식별하는데 용이한 자료들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해당 조문의 신설과 관계없이 저작권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 권리로 인정됨으로써 저작물의 복제 및 배포 등에 관하여 처분권한을 가지고 있어 미리 그 범위를 설정할 수 있고, 게시된 내용을 삭제할 수 있음은 당연히 받아들여진다고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3.2.2.2 본인 게시물에 대한 삭제 요청문제

잊혀질 권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는 본인이 게시한 정보에 대한 처분권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기 유통되어 본인의 처분권 범위를 벗어난 개인과 관련된 정보의 삭제에 관한 사항이다. 이는 개인의 저작물 혹은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서 게시한 여러 게시물에 대한 삭제 등의 개인에게 귀속된 처분권과는 관계없이 해당 저작물 등이 옮겨진 여타 온라인 서비스의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청구권한 여부와 관련될 수 있다. 정통방법의 개정안은 이용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일반에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여, 저작물에 대한 배포 및 복제 권한을 제한적으로 설정하였음에도 무단히 저작권자가 원치 않는 범위로 유통된 경우의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에 관하여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공개자체와 복제 및 공중송신 등은 구체적으로 공개한 저작자의 의사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개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본인이 옮기지 않은, 즉 타인이 옮겨다 게시한 타 서비스상의 본인의 저작물 혹은 게시물에 대한 삭제

요청권을 인정한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인데, 이는 이용자가 일일이 삭제하고자 하는 정보의 소재를 확인하여 해당 서비스 제공자에게 요청해야 한다는 문제를 야기하고, 실제로 해당 요청을 개별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들이 단순히 삭제요청이 있는 경우 반드시 의무적으로 수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도(정통방법 제44조의 2의 경우 사생활 침해 및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조치 의무가 발생한다는 점과 비교된다) 보다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3.2.3 우리 인터넷 법제의 과제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잊혀질 권리와 관련된 법률의 개정안을 살펴 보건데, 잊혀질 권리에 관한 근본적인 쟁점이나, 우리법제의 수용에 있어서 고려해야할 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미진함을 확인할 수 있다. 개인정보주체 혹은 정보통신서비스의 이용자 보호 측면에서의 제도 도입을 감안하더라도 해당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여타 기본권을 비롯한 실정법상 권리의 제한이나, 제도의 실효성 문제에 대해서 깊이 있는 검토가 필요한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잊혀질 권리가 우리 헌법상 기본권으로 수용될 수 있는 내용의 권리인지, 아니면, 기본권 보호목적을 위하여 입법 형성될 필요성이 요구되는 권리인지에 관하여 제대로된 논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이는 앞서 문제제기한 바와 같이 필자의 의견과 달리 아직까지는 당연히 잊혀질 권리를 헌법상의 권리로 전제하고, 구체적 근거 및 성격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형태의 논의가 진행되는 상황을 환기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 및 연구를 통하여 잊혀질 권리의 입법 필요성이 어떠한 헌법적 근거에 의하여 인정되는지, 구체적인 수용모습에 관하여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 잊혀질 권리를 수용하는 과정에 있어 우리 헌법상 기본권 갈등 문제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2, 5]. 인터넷 등 온라인 서비스는 개개인의 표현 활동을 촉진하고, 정보를 매

우 신속하고 광범위하게 전파하는데 엄청난 효과를 발휘하여 인간의 삶을 변화시킬 정도에 이르렀다. 이러한 기반 환경 하에서 특정한 정보들을 인위적으로 삭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방향으로 오용될 수도 있고, 기록된 정보의 활용의 제한을 가져 올수도 있다. 애초에 잊혀질 권리를 통한 인격권 보장 등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했던 논의가 주를 이루었던 것에 비하여 EU 내부에서도 본격적으로 표현의 자유와 균형 문제가 적극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15].

셋째, 잊혀질 권리를 보장을 통한 개인정보보호의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 개인정보주체, 이용자 보호 방안인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1년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을 통하여 보호 대상을 확대하고, 고유식별체계 및 민감정보의 수집을 까다롭게 하는 등 개인정보와 관련한 규율의 정도가 유럽에 비해서도 매우 강한 수준임을 감안할 때, 잊혀질 권리를 제대로 수용하여 처리자의 의무이행사항을 확대하는 것이 과연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인지 검토하여야 한다[1]. 개인정보처리자가 350만 수준으로 확대되었고, 개인정보 처리정도, 법령의 의무사항 준수 상황도 천차만별인 현실에서 수범자의 부담을 일률적으로 가중시키는 것은 궁극적으로 개인정보주체 보호에도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 현재 규정되어 있는 잊혀질 권리의 내용을 구현할 수 있는 관련조문의 실효성 있는 행사방안을 강구하거나, 개별 협회 등의 단위·조직별 개인정보보호 의무자의 수준을 고려한 개인정보 처리지침 및 자율규제내용을 마련하여 잊혀질 권리를 도입하고자 했던 근원적 위험요인의 억제 및 제거에 관하여 노력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4. 결 론

유럽에서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강화 혹은 인격권 보장을 위한 방편으로서 법제화가 추진되고 있

는 잊혀질 권리에 관한 논의는 인터넷과 온라인 생활이 일상화된 정보화 사회에서는 그 필요성이 특별한 거부감이나 제한 없이 인정되는 것만 같다. 우리사회 또한 인터넷 공간에서의 사생활 침해, 개인정보 유출 등의 문제들이 심각한 수준으로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잊혀질 권리에 관한 논의는 효과적인 논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더군다나 국내에서 최근에 잊혀질 권리를 도입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관련 법안의 개정 발의가 이루어진 것은 발 빠르게 개인정보 주체이자 정보통신 서비스 이용자인 국민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노력이 엿보인다는 점에서 잊혀질 권리에 관한 관심의 증대를 불러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해당 입법안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온라인상에서 기록되고 잔존하고 유통되는 개인정보에 따른 위험 발생이라는 구조에 대한 오해와 저작권법제를 통한 처분권 확보가 가지는 한계에 대한 미진한 인식에 있다는 점에서 국내 인터넷 법제의 잊혀질 권리 수용방안에 관하여 제대로 된 논의 쟁점을 찾는 것이 우선하여야 합리적인 제도 도입이 가능하리라 판단된다. 실질적으로 EU의 데이터보호 규정(안)을 통해서 구현하고자 하는 잊혀질 권리의 내용은 물론 당시에 잊혀질 권리를 고려하여 해당 규정을 마련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나 이미 국내에서 2011년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당시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 청구권이 포함되면서 이미 우리 법제에 수용되었다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법령에서 정의하는 개인정보의 범위가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으로서 인정되는 개인정보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한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 보완을 위한 잊혀질 권리의 도입은 과연 우리 헌법상 기본권의 내용으로 수용될 수 있는지 혹은, 입법창설을 위해 필요한 권리로서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순차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우선적 고려사항이 특별한 논의 없이 당연시 전제되었기 때문에 성급한 입법 시도가 있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법제의 제도 수용을 위해서는 잊혀질 권리의 보장을 통해

위축될 수 있는 기본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살펴 보고 우리사회가 요구하는 각 기본권 보호 정도 및 제도 도입의 필요성 및 보호 수준이 어느 지점에 있는지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이러한 구체적이고 합리적 판단과 논의 및 합의점 도출 없이 제도를 수용하는 것은 개인정보주체 및 이용자 보호를 통한 사회안정 및 규범의 역할 수행이라는 대승적 목적에도 부합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나 복잡하게 연결되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우리 인터넷 법제의 경우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규율방식을 통한 사회 발전을 위해서는 규범의 체계를 거시적으로 조망하면서도 법리를 세밀하게 분석할 수 있는 쟁점 및 과제를 도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1] 권현영, “새로운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이후 현황분석과 개선방안”, 『2012 개인정보보호의 최근 동향 국제학술대회 자료집』, 개인정보보호법학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12), p.28.
- [2] 문재완, “프라이버시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인터넷의 규제의 의의와 한계”, 『언론과 법』, 제10권, 제2호(2011), pp.26-29.
- [3] ‘사이버 불링’ 끈질긴 모욕 美서만 한달새 10代 7명 ‘자살’, 문화일보, 2012.
- [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노근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19대 03676),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노근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19대 03675).
- [5] 정상기, “잊혀질 권리와 표현의 자유”, 『과학기술법연구』,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제18권, 제3호(2012), pp.207-231.
- [6] 최진실 자살, 얼굴 숨긴 인격 살인 ... 인터넷 악플 이대론 안된다, 중앙일보, 2008.
- [7] 현재, 99헌마 513, 2005.
- [8] 홍완식, “유럽연합의 입법에 관한 연구”, 『법제』, 법제처, (2004), pp.16-17.
- [9] “A comprehensive approach on personal data protection in the European Union”, EUROPEAN COMMISSION, Brussels, (2010), p.2.
- [10] Article 29 Data Protection Working Party, “Opinion 01/2012 on the data protection reform proposals”, (2012), pp.13-14.
- [11] Article 29 Data Protection Working Party, “Opinion 08/2012 providing further input on the data protection reform discussions”, (2012), p.22.
- [12] Directive 95/46/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4.10.1995 on the protection of individuals with regard to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and on the free movement of such data.
- [13] <http://www.cyberbullying.us/research.php>.
- [14] Jan Philipp Albrecht, “Draft Report on the Proposal for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Committee on Civil Liberties, Justice and Home Affairs, EUROPEAN PARLIAMENT, (2013), p.53, 98, 196.
- [15] Norberto Nuno Gomes de Andrade, ‘Oblivion : the right to be different. from oneself reproping the right to be forgotten’, Revista D’internat, Dret I Política, Universitat Oberta de Catalunya, (2012), pp.124-126.
- [16] Proposal for a Regula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the protection of individuals with to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and on the free movement of such data(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2012), p.44, pp.92-93.
- [17] Peter, D. M. and B. R. Tirtea, “The right to be forgotten-between expectation and practice”, *Enisa*, (2011), p.13.

◆ 저 자 소 개 ◆



정 상 기 (chungsk@hannam.ac.kr)

현재 한남대학교 법과대학 교수(헌법 담당)로 재직 중이며, 관심분야는 IT 관련 헌법적 문제, 저작권을 중심으로 하는 지적재산권문제, 과학기술법 등이다.



김 경 열 (kimky1023@gmail.com)

현재 광운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행정법)에 재학 중이며, 한국정보화진흥원과, 인터넷기업협회에 근무하였으며, 관심분야는 개인정보보호, 공공정보 활용 등이다.